

한국정밀공학회지 편집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1년 10월 7일

개정 2015년 4월 10일

제1조 목적**제2조 구성****제3조 업무****제4조 편집장의 직무****제5조 편집이사의 직무****제6조 임기****제1조(목적)**
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정밀공학회(이하 학회라 한다) 정관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정밀공학회지(이하 학회지라 한다) 편집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

- 가. 본 위원회는 위원장인 편집장과 학회 편집이사 중 편집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- 나. 편집장은 이사회에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.
- 다. 편집이사는 편집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.
- 라. 필요에 따라 편집이사 중 1인을 부편집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제3조(업무)

본 위원회는 학회지의 기획, 편집, 논문심사, 출판 및 학회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, 이를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.

제4조(편집장의 직무)

- 가. 편집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학회지의 기획, 편집, 논문심사, 출판 및 학회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- 나. 본 규정 제3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, 그 회의를 주재한다.
- 다. 중요 결정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5조(편집이사의 직무)

- 가.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기획, 편집, 논문심사, 출판, 학회지 발전에 관한 업무 및 논문 심사과정의 운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.
- 나. 본 규정 제3조의 정기 회의에 참가하여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심의협약한다.

제6조(임기)

- 가. 편집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.
- 나. 편집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.
- 다. 편집이사의 위촉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